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3년 7월

[세법개정](#) | [과세관청 소식](#) | [예규·판례](#) | [Contacts](#)

• 예규·판례

가.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의 당부 (조심 2023 부 6839, 2023.07.21)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 29 조의 7(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산정 시 2019.12.31. 법률 제 16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 1 과 같이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0.5 명) 한도가 아닌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이하 “비청년상시근로자”라 하며, 청년등상시근로자와 합하여 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증가인원(16.92 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000 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2019.12.31. 법률 제 16835 호로 개정된 쟁점규정 제 1 항 및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 등에 따르면 쟁점세액공제 산정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3.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2019.12.31. 법률 제 169835 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 29 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판단

-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의 대상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와 비청년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 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 16835 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 1 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제 1 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납세액공제 국별한도 일부국가 결손 안분 관련 사건 (감심 2023-112, 2023.07.14)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22. 6. 16. 2 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결손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이외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구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2022. 11. 8. 2 개 이상의 국외사업장 중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구하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쟁점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판단(기각)

-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안분

하는 방식이 실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보다 세액을 과소 공제하게 되어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 2 항은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로 인해 세액이 과소 공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현재 공제 한도액을 구하는 방식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82 조 [별지 제 8 호 서식 부표 5 의 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서”의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와 같이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및 이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 57 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이나 위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조특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법정 기업에 해당하게 된 시점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 2023.07.04)

■ 질의

- 조특법 제 16 조 제 1 항(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 1 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 2 안> 투자시점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 안이 타당함.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2019.12.31. 법률 제 16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 년 최초로 고용중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 16835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 29 조의 7 제 2 항 및 같은 법 부칙 제 17 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 2023.07.04)

■ 질의

‘18 년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준이 ‘공제를 받은 직 전 과세연도(‘17 년도)’의 상시근로자 수인지, 또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8 년도)’의 상시근로자 수인지 여부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2019.12.31. 법률 제 16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 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 16835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 29 조의 7 제 2 항 및 같은 법 부칙 제 17 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